

서울고등법원 2024. 6. 21 선고 2023나2019868 판결 [주식매매대금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4. 6. 21 선고 2023나201986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2가단5221485 판결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성울

피고, 항소인B

변론 종결 2024. 4. 26.

판결 선고 2024. 6. 21.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2가단522148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29,459,928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기록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고, 제2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약어 포함).

다음

가. 제1심판결 제3쪽 제7행의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을 "피고가 2020. 8.부터 2020. 11. 초까지 1,141,200주를 제3자에게 매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투자조합에 사전 통지 및 동의절차를 미이행한 행위는"으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제3쪽 제19행 내지 제4쪽 제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투자조합과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2021. 12. 31.까지 이 사건 투자조합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 8만 주(투자 원금 2억 원)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해당 투자원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투자조합의 위 주식 인수대금 납입 다음 날인 2018. 7. 3.부터 피고의 해당 지분 인수일인 2021. 12. 31.까지 연복리 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되 위

매매대금 지급을 지체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을 연 22%로 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이 사건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산정한 주식매수대금 229,459,928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22.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제1심판결 제4쪽 표 아래 제3행의 "연채채무자가"를 "연대채무자가"로 고친다.

라. 제1심판결 제4쪽 밑에서 제6행의 "그런데"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더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투자계약 제17조에는 계약 위반이 있을 경우 이 사건 회사 또는 피고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가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의 주체라는 점이 문언상 명백하고, 이 사건 회사가 2020. 11. 3. 원고에게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 주식을 처분하였다는 점을 알리는 문서를 발송할 당시 피고가 대표이사로서 위 문서에 날인하였으며, 원고는 2020. 11. 11. 피고를 수신인으로 하여 이 사건 투자계약 제17조에 따라 피고에게 주식을 매수할 것을 청구하는 문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피고와 이 사건 투자조합 사이에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투자계약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이 사건 투자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라. 제1심판결 제5쪽 제15, 16행을 삭제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 판단하는 부분

가.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에 의하여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 병합 등으로 소각되어 피고가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이 사건 투자조합의 주식인도의무가 이행불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1) 갑 제6 내지 8,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서울회생법원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21. 8. 13.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고 2022. 9. 21.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한 사실, 위 회생계획에는 이 사건 회사가 기발행한 보통주 17,667,660주 중 피고 및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보통주 3,910,900주에 대하여는 액면가액 500원의 보통주 25주를 액면가액 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고, 나머지 기타 주주가 보유한 13,756,760주에 대하여는 액면가액 500원의 보통주 5주를 액면가액 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며, 회생채권자가 회생채권액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신주를 발행하고, 병합된 기존 주식 및 회생채권에서 출자전환된 신주 등 잔여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액면가액 500원의 보통주 15주를 액면가액 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며, 주식병합 등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무상소각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 위와 같은 회생계획에 따라 이 사건 투자조합이 보유하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80,000주는 5:1로 병합되어 16,000주가 되었다가 15:1로 재병합되어 1,066주가 되어 이 사건 투자조합 명의 계좌에 입고되어 있는 사실(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전자증권으로 발행 및 예탁되었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투자조합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이 사건 회사 주식 80,000주가 이후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주식 병합이 이루어진 결과 최종적으로 1,066주로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방식의 주식 병합은 자본금감소의 방법으로 주식수를 감소시키기는 하지만 병합 전의 주식과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이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48482 판결,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투자조합 명의 계좌에 입고되어 있는 1,066주는 주식 병합 전 이 사건 합의 당시 이 사건 투자조합이 보유하던 이 사건 회사 주식 80,000주와 실질적으로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투자조합이 위와 같은 주식 병합 결과 위 1,066주를 전자등록하여 보유하고 있는 이상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주식인도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회생계획에 따른 주식 병합 등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가치가 하락하였다거나 이 사건 투자조합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가진 지분비율이 희석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에 따른 매매목적물인 주식의 멸실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결국 이 사건 투자조합의 주식인도의무가 주식 병합 내지 그에 수반한 주식 소각 등으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한편,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38조 제1항 후문).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주식매수를 청구하고 이 사건 투자조합이 전자등록하여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80,000주를 2021. 12. 31.까지 인도하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이 사건 투자조합의 주식인도의무에 관한 이행을 언제든지 제공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기한이 지나도록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투자조합으로부터 주식을 인도받지 아니하여 수령을 지체하던 중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출자전환 및 신주발행과 주식 병합 등이 이루어져 이 사건 투자조합이 보유하는 주식의 수나 지분비율이 감소하게 되었다. 이러한 회생계획에 따른 주식 병합 등에 의하여 이 사건 투자조합이 보유하는 이 사건 주식의 수가 감소하고 지분비율이 희석됨으로 인하여 당초 약정한 이 사건 투자조합의 주식인도의무의 이행이 일부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원고의 책임이 없음은 분명하고, 피고 역시 그 책임이 없다고 보더라도 피고의 수령지체 중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 사건 투자조합이 주식인도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인도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주식 부분에 해당하는 매수대금도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투자조합의 주식인도의무와 피고의 주식매수대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설령 원고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이 사건 합의가 쌍무계약인 주식매매계약으로서 그 성질상 이 사건 투자조합의 주식인도의무와 피고의 주식매수대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더라도,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의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오히려 불성실한 상대 당사자에게 구실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일방 당사자가 하여야 할 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495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 및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투자조합은 이미 주식인도의무의 이행제공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전자등록된 주식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매매대금을 입금하면 즉시 계좌간 대체를 통하여 주식의 양도가 가능하므로, 원고가 매수대금과 상환으로 주식을

이전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한 이상 주식인도의무의 이행제공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합의서 제2조는 "(1) 이 사건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본건 주식의 잔여 부분인 80,000주에 대해서는 2021. 12. 31.까지를 기한으로 하여 피고가 매입하는 것으로 한다. (2) 피고가 본 합의 체결 후 2021. 12. 31. 이전에도 원고에 대하여 위 주식의 잔여 부분 일부 또는 전부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원고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3조는 "(3) 본건 주식의 거래가 제2조에 따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투자계약서 제17조 제3항에 따라 가산금리 연 7% 외 추가적으로 연 15%가 지급기일까지 가산된다."라고 정하고 있을 뿐(이 사건 합의의 기초가 된 이 사건 투자계약서 제17조 제3항에서도 "이 사건 회사 또는 피고가 상기 제1항의 금액(이 사건 회사 또는 피고의 귀책으로 인하여 이 사건 투자조합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이 사건 투자조합이 지정하는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 다음 날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연복리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연배상금으로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투자조합이 주식인도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을 하였음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가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는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합의 시 피고의 대금지급의무의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률만을 정하고 이 사건 투자조합의 주식인도의무의 이행지체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것은 이 사건 투자조합의 주식인도의무는 언제든지 이행할 수 있는 상태이거나 이미 그 이행제공이 이루어진 것을 전제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3)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지급기한이 경과한 2022. 1. 7. 및 2022. 2. 23. 위 80,000주에 대한 주식매수대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최고하였다가 2022. 7.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투자조합이 주식인도의무의 이행제공을 위하여 별도의 행위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대금 지급을 거듭 청구한 것은 주식인도의무의 이행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매수하기로 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00,000주 중 120,000주에 대한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그 주식을 인도받았으므로, 나머지 80,000주도 정해진 매수대금만 지급하면 원고가 즉시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왕정옥

판사박선준

판사진현민

별지